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5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2.

발 의 자 : 이인선 · 박충권 · 이종배
김성원 · 고동진 · 안철수
서지영 · 유용원 · 박수영
임이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정보를 입력·관리·제공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취학의무대상자에 대한 취학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감 및 교육장이 아동학대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, 학대 이력이 있는 아동에 대한 소재·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교육감·교육장에게 아동학대정보를 통지하도록 하고, 아동학대정보 요청권자에 교육감·교육장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28조의2 및 제71조제2항제1호).
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의2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제3항 및 제4항”을 “제3항부터 제5항까지”로, “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”을 “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 목적”으로 한다.

3의2. 교육감 및 교육장

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, 아동학대 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71조제2항제1호 중 “제28조의2제5항”을 “제28조의2제6항”으로, “요청 목적”을 “목적”으로 한다.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8조의2(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) ① · ② (생략)	제28조의2(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, 피해아동의 가족,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 <u><신 설></u>	1. ~ 3. (현행과 같음) <u>3의2. 교육감 및 교육장</u>
4. ~ 9. (생략)	4. ~ 9.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 <u><신 설></u>	④ (현행과 같음) <u>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사례판단 결과 아동학대로 판단된 경우로서 피해아동이 의무교육대상자인 경우에는 관할</u>

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제71조(벌칙) ① (생 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. 1.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 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 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 람 1의2. ~ 2. (생 략)	<u>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아동정 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, 피해아 동의 가족,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관 한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. 다 만,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</u>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----- -----<u>아동의 보호 및 아동 학대 발생 방지 목적</u>----- -----. 제71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제28조의2제6항----- -----<u>목적</u>----- ----- 1의2. ~ 2. (현행과 같음)
---	---
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---------	------------